

서울 공항버스 밤샘주차 예외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경기문 의원 등 12명

나. 의안번호 : 제2180호

다. 제출일자 : 2024. 10. 15.

라. 회부일자 : 2024. 10. 18.

2. 주 문

- 서울권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는 4개 회사 운행 대수는 약 440대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고 운송사별 등록된 차고지를 보유하여 운행되고 있음
- 다만, 서울 전 지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는 시민들의 신속한 이용과 편의를 위해 기점 부근에 주차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 법에서는 등록된 차고지 외의 밤샘주차는 불법인 상황이며 운영 현실과 괴리가 있다 할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에 밤샘주차 예외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함

3. 제안이유

- 서울권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는 4개 회사가 있고 운송업체별 등록차고지는 1~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전지역을 약 1천 회 이상 운행하고 있음. 운행 시간은 회차 지점에서 새벽 1시에 운행을 종료하고 첫차는 새벽 4시에 운행을 시작하고 있음
- 이는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운행 시간임에도 실질적인 등록차고지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기점으로 복귀해 다시 첫차 운행을 시작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고 등록된 차고지 외 기점 부근 주차장에 공항버스 밤샘 주차 허용이 필요함
-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에서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실제 등록차고지 밤샘주차 후 첫차를 위해 최소 80분 이상을 소요하면서 운수종사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정시 운행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 시내 운행 기점 주변에 새로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기점 인근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원활한 공항버스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만큼 법정 차고

지를 보유한 경우 기점 부근 주차장에 밤샘주차 예외를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버스정책과 : 원안 가결

- 공항버스 운수종사자 업무 과중 해소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등록차고 외 밤샘 주차 예외 조항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본 법령 개정 건의에 동의함

5. 이 송 처

○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1) 버스정책과-17910('24. 10. 30.) 제327회 정례회 의원발의 및 청원 건 대한 의견제출

6.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서울권역과 인천·김포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운영 특성상 기·종점 부근에서 밤샘주차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등록차고지 이외의 밤샘주차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공항버스가 기·종점 부근의 주차장을 이용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공항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 제4조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발급받는 운송사업으로³⁾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⁴⁾에 따라 공항, 도심공항터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면허신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주사무소 위치, 운행계통, 노선도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차고지 토지 소유권(사용권), 법인등기부등본 등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널, 국제여객선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

※참고 : 서울시 공항버스 현황 자료

업체명	노선수			인가대수			운행 현황	면허기간	
	소계	고급	심야	소계	고급	심야			
소계	43	38	5	436	422	14	43개 노선, 436대	-	-
(주)공항리무진	23	20	3	243	235	8	23개 노선, 243대	5년	'20.1.1~ '24.12.31.
서울공항리무진(주)	7	7	-	87	87	-	7개 노선, 87대	1년	'24.1.1~ '24.12.31.
(주)한국공항리무진	7	5	2	51	45	6	7개 노선, 51대	1년	'24.1.1~ '24.12.31.
한국도심공항(주)	6	6	-	55	55	-	6개 노선, 55대	1년	'24.1.1~ '24.12.31.

- 공항버스 4개사 만료일 도래에 따른 면허갱신 기간(2025.1.1. ~ 2030.12.31.) 예정⁵⁾

- 현재 서울과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을 운행하는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총 4개 회사로 노선수 43개⁶⁾, 인가대수 436대가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은 공항버스들은 주로 인천·김포공항을 기·종점으로 운행되나 한정면허 발급시 등록한 차고지는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여 운행을 종료한 후 차고지에 복귀하고 새벽 첫차 이용 시민을 위해 먼 거리를 다시 이동하는 것은 운영 여건을 악화시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관련 평가 계획' 버스정책과-17347(2024.10.25.)

6) '공항버스 회사별 노선번호'

- (주)공항리무진 : 6000, 6001, 6002, 6003, 6004, 6005, 6007, 6008, 6010, 6011, 6012, 6013, 6014, 6015, 6016, 6017, 6018, 6019, 6021, 6030, N6000, N6001, N6002
- 서울공항리무진(주) : 6006, 6009, 6020, 6200, 6300, 6600, 6020-1
- (주)한국공항리무진 : 6701, 6702, 6703, 6705A, 6705B, N6701, N6703
- 한국도심공항(주) : 6100, 6102, 6103, 6104, 6101, 6105

키고 운전자의 피로도를 높이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 : 서울시 공항버스 업체별 차고지 위치

업체명	차고지 위치
(주)공항리무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8길 17(강서공영차고지)
(주)한국공항리무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한국도심공항(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서울공항리무진(주)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길 61-29(장지공영차고지)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7),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8) 및 [별표5] 등에서는 한정면허 사업자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운송여건에 따라 차고지가 아닌 경우에도 밤샘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9)하고 있음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3. 법 제4조, 제28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다.**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영업중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이하 생략-
- ※ 1차 위반 : 10만원, 2차 위반 : 15만원

※참고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예외 규정

예외 규정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3)	등록관청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허용된 관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정된 구역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4)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속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

○ 이에 동 건의안은 공항버스 운행 현실을 고려하여 등록된 차고지 외에 운행 기·종점 부근 주차장을 이용한 밤샘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실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5] 단서 조항10)에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항버스 운행 안전을 위해서 공항버스의 등록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을 위한 동 개정건의안은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등록차고지 외에 밤샘주차가 허용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민원 유발 우려가 있는 바, 관련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장소가 주차장인 점을 고려하여 공항버스의 경우도 주차장을 확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3. 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이하 생략-

보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외 규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 민원 최소화 및 안전 확보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